#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강선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410

발의연월일: 2020. 7. 3.

발 의 자: 강선우·최인호·김진표

이수진 · 신동근 · 서영석

한정애 · 김철민 · 전용기

신정훈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고 있음. 그런데 영업자 등 지위승계 과정에 있어 양수인이 관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양도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등과 같이 양수인이 위반행위를 예상할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 행정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하는 것은 선의의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부당한 측면이 있음.

이에 양수인 등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현행법은 건강기능식품 제품명, 원재료명 등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또는 위해발생 우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

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 식품 안전관리에 적정을 기할 필요가 있음(안 제34조 단서 및 제47조).

#### 법률 제 호

###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(상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다)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4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

- 3.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자
- 7의2.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 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7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한 적용례)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되는 등의 이유로 종전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 받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- 제3조(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제47조제1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1조의3제1항에 따라 검사명령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 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 정 안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34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             | 제34조(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 |
| 계)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              | 계)                |
| 하거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에는 제32조제1항 각 호(제10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호는 제외한다) 또는 제33조제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1항을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영업자에게 한 행정제재처분의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부터 1년간 양수인이나 합병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,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중일 때에는 양수인이나 합병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정제재처분의 절차를 계속 진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행할 수 있다. <u>&lt;단서 신설&gt;</u> | <u>다만, 양수인이</u>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(상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에 의한 지위 승계는 제외한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다)이 영업을 승계할 때에 그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그러하지 아니하다.        |
| 제4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          | 제47조(과태료) ①       |
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부과한다.

1. · 2. (생략)

<신 설>

- 3.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

   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

   하지 아니한 자
- 4. ~ 7. (생 략) <신 설>

8.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2의2.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
- 3.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 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 르게 신고한 자
- 4. ~ 7. (현행과 같음)
- 7의2.제21조의3제2항을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
- 8. (현행과 같음)
- ② · ③ (현행과 같음)